

제126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

- 개최기관 :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공원과
- 일 시 : 2019년 7월 12일(금요일), 14:00 ~ 16:00
- 장 소 :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(4동 1층)
- 출석위원 : 총 17명(정부위원 4명, 민간위원 13명)
- 진행순서
 - ① 개회 및 모두말씀, 심의 안건 상정(위원장)
 - ② 제125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(간사)
 - ③ 안전보고 및 심의
 - ④ 폐회(위원장)
- 상정 안건 목록

【심의사항】		
1	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연장 및 주차장 신설 공원계획 변경안	(공개)
2	태백산국립공원계획 자연환경 영향평가 결과안	(공개)

-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심의안건 1

1. 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연장 및 주차장 신설 공원계획 변경(안)

가. 제안사항

- 오대산국립공원 남측 공원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연장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「자연공원법」 제15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할 것을 심의·의결함

나. 제안사유

- 공원 외 지역에 기 조성된 농어촌도로와 주차장을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주차장부터 월정사·상원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승용차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환경과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자 :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

(2) 신청내용

- 사업대상지 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41번지 일원
- 용도지구 : 국립공원외 지역으로 해당 없음
- 변경내용
 - 진입도로 노선연장

구 분	내 용
구 간	진부면 동산리 ~ 상원사
연 장	당초) 9.7km → 변경) 11.2km (증 1.5km)
폭 원	당초) 8.0m → 변경) 8.0 ~ 10.0m

• 주차장 신설

구 분	내 용
부지면적	22,534㎡
주차대수	586대 (대형 34대, 소형 537대, 장애인 15대)

라. 주요 발언 요지

(1) 심의안건 발표 및 질의·응답

- (신청자) 심의안건 발표 및 설명
- (위원) 셔틀버스 운영은 좋은 모델인 것 같아 보임. 차량 통제 계획은 무엇이며,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 탐방객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?
- (신청자)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제하더라도 대형차량, 장애인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, 향후 보행탐방로 확보도 검토할 예정임
- (위원) 셔틀 운행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?
- (신청자) 7대 정도 운영할 경우 10분 ~ 12분 정도 예상됨. 3대로 운영하면 그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.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감안했을 경우 그 정도 투입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(위원)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 국립공원의 경우 셔틀을 운행하는데, 그 국립공원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야 10분임. 운영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, 차를 두고 와도 불편함이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
- (위원)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임
- (신청자) 차량 배차간격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음
- (위원장) 안전의 취지가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국립공원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므로 친환경적 운영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음
- (위원) 지리산 뱀사골의 경우 2년 전 도원 명품마을에서 7월과 8월에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, 탐방객이 다소 불편하였지만, 반응이 아주 좋았음. 이번 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.

(2) 안전 심의

- (위원) 나중에 셔틀버스 운영 후 어떤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, 탐방객 민원 및 차량통제의 유연성 등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운영성과를 정리하였으면 좋겠음
- (위원)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원안가결 하겠음. 향후 차량 통제 및 셔틀버스 운행 전·후를 비교하여 그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할 것

마. 결정사항

- 원안 가결

바. 표결에 관한 사항

- 해당 없음

사. 기타

- 해당 없음

2. 태백산국립공원계획 자연환경 영향평가 결과(안)

가. 제안사항

- 「자연공원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『태백산국립공원계획 자연환경 영향 평가 결과(안)』을 「자연공원법」 제10조에 에 의거하여 심의·의결함

나. 제안사유

- 태백산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할 당시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(2016.4.15.)에서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「자연공원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현황조사, 자연생태계 변화분석,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, 폐기물 배출분석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자 :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

(2) 신청내용

- 공원시설계획 고시내용 : 공공시설 7개소, 교통·운수시설 35개소, 휴양 및 편익시설 12개소, 문화시설 1개소 등 55개소
- 금번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: 총 18개소

시설구분	시설명	개소수	비고
계		18	
교통·운송시설	진입도로	1	(기조성 시설) 연장 1.9km
	탐방로	16	(기조성 시설) 연장 47.2km
휴양 및 편익시설	야영장	1	(미조성 시설) 부지면적 27,000m ²

라. 주요 발언 요지

(1) 심의안건 발표 및 질의·응답

- (신청자) 심의안건 발표 및 설명
- (위원) 정상정복형 탐방문화를 지양하고 저지대 탐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, 탐방로에 암석 및 돌이 많은데 탐방노면을 잘 정비해서 탐방객 이용편의를 개선시켰으면 좋겠음.
- (신청자) 좋은 의견에 감사함
- (위원) 개별 공원시설로 자연환경영향을 평가할 경우 문제가 없어 보이나 태백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밀도가 내륙 국립공원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이므로 신규 조성예정인 공원시설과 기 조성시설을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
- (신청자) 태백산국립공원을 지정할 당시 있었던 기존 탐방로 중 이용률이 저조한 구간에 대해 태백시와 폐지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, 주민,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
- (위원) 금천야영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?
- (신청자) 국립공원 지정 당시와 여건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야영장을 폐지 또는 이전 여부 검토할 예정이며, 변경사항이 있을 시 차기 공원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겠음

(2) 안건 심의

- (위원) 금천야영장은 급경사 지형, 연접부지 태양광발전시설, 접근성 불량 등으로 야영장 부지로 적절하지 않아 보였음. 그러한 측면에서 금천야영장을 폐지하고 대체 야영장 조성을 검토하는 계획은 논란을 미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잘 된 것으로 보임

- (위원) 대체야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새로운 공원시설을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공원계획 변경절차와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. 금천야영장의 폐지에 관한 문제는 금일 심의 맥락상 맞지 않아 보이고 대체야영장 검토 시 함께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짐
- (위원)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야영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. 원안 가결하겠음

마. 결정사항

- 원안 가결

바. 표결에 관한 사항

- 해당 없음

사. 기타

- 해당 없음